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다) 상고기각
제목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이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產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
- 특히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함.
-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지리적 표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지리적 환경에는 기후·토양·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광천김'에 관하여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를 판단함.

(2) 사안개요

- 피고
 - 영어조합법인.
 -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권리자.
- 원고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표장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함.
 - 피고가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허심판원
 - 이 사건 표장이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인 특허법원은
 -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고,
 -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법리

1.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입법 취지

-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함.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상품의 산지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같은 조 제3항(현행 상표법 제33조 제3항)
 - 위 표장이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음.

입법 취지

-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를 통하여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2.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법리

-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함.

판단구조

-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됨.
- 특정 지역과 상품의 특성 사이에는 '실질적 연관성'이 요구됨.

- 그 지리적 환경에는
 - 기후·토양·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
 -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이 포함됨.

3.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 판단기준

대법원 법리

-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1)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 2)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 3)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 4)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 5)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 6)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 따라서 사례에서 '명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명성과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이에 **실질적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4.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천김'의 명성

- 광천읍은 1990년대 이전부터 **재래김의 유통·판매시장**으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
- 2000년대부터 광천읍 일대에서 조미김의 생산·판매량이 증가함.
- 광천읍 일대의
 - 상인,
 - 김 가공업체,
 -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등이 종래 광천읍의 재래김 유통·판매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
- 광천읍 상인들은 축제 등을 통하여 조미김을 **지역특산물로 적극 홍보**함.
- 광천읍 소재 조미김 생산업체는 **품질 유지 활동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함.
- 홍성군은 **조미김 산업의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함.
- 이러한 활동들이 결합하여 광천의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이 형성됨.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주체 적격

- 구 상표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주체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인 피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됨.
- 판단 시
 - 피고의 법인격
 - 정관상 목적
 - 조합원 자격
 - 실제 구성관계

등을 고려함.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1.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

가. 지리적 표시의 요건

- 원심은 구 상표법이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 상품 **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요건이고, 따라서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족하다고 판단함.

나.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 원심은 상품 **의** 품질·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 기후,
 - 토양,
 - 지형 등의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 전통적인 생산비법,
 - 시설 등의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
-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이 없다면 당해 상품 **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함.

다. 광천김에 대한 적용

- 광천읍은 1990년대 이전부터 **재래김의 유통·판매시장으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
- 이후
 - 광천읍 상인의 지역특산물 홍보 활동,
 - 광천읍 소재 조미김 생산업체의 품질 유지 및 홍보 활동,
 -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지원 활동등이 결합함.
-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에는 광천읍 일대에 다수의 조미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조미김을 생산·판매하고 있었음.
-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 **광천의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은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상인·생산업체·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서로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 나아가 이러한 환경이 없었다면 광천의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을 얻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광천의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은 본질적으로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그중 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 피고의 등록주체 적격

- 피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임.
- 원심은 법인격을 전제로 피고와 그 구성원인 조합원을 구별하여 판단함.
- 피고 정관상 조합원 자격은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음.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 법인 자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함.
- 이에 원심은 피고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

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5) 대법원 판단

1. 지리적 표시의 판단기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함.
- 또한 상품의 '명성'에 대해서는
 -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2. 광천김에 대한 적용

-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

3. 피고의 등록주체 적격

- 대법원은 피고가
-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
-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결론 역시 수긍함.

(6) 결론

-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은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광천김' 표장은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
- 피고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상고기각.

(7) 한줄 키워드 요약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그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자연환

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특히 '명성'은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가격 차이 및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1.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의 관계

- 구 상표법은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병렬적으로 규정함.
- 따라서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이 모두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됨.
- 이 사건에서는 특히 조미구이 김의 '명성'과 광천읍 사이의 관계가 문제됨.

2. 지리적 환경의 범위

- 지리적 환경은 자연환경적 요인에 한정되지 않음.
- 대법원은
 - 기후·토양·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
 -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사례에서 특정 상품의 명성이 지역의 역사·생산활동·전통적 생산방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함.

3. '명성' 판단 시 핵심

- 단순히 특정 상품이 유명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그 명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역사와 전통 →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 고유의 특성 → 소비자 인식·인지도 → 가격 차이 →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4. 원심 법리와 대법원 법리의 표현상 차이

- 원심
 -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이 없다면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 대법원
 -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 사례형 답안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실질적 연관성'을 핵심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5. 이 사건의 적용범위

- 이 사건은 상품의 특정 '품질' 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었는지보다 상품의 '명성'과 특정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따라서 유사 사례에서는
 -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 중 문제되는 요소의 특정

→ ㉔ 해당 요소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이의 실질적 연관성 검토

→ ㉕ 명성이 문제될 경우 6개 종합고려 요소 적용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6. 등록주체 적격은 별도 검토

-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요건임.

따라서 사례형에서는 두 쟁점을 구분하여 아래를 각각 검토하여야 함.

- 1) 표장 자체의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
- 2) 등록주체의 적격 여부